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

2018년 3월 9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3.8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8. 3. 8(목)	담당부서	불공정무역조사과
담당과장	정병락 과장(044-203-5880)	담 당 자	정종윤 사무관(044-203-5881)

무역위원회,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강화

- 업종별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(19개)와 간담회 개최 -
-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기간 확대(행위 발생일 1년→2년 이내)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'17. 3. 8. (목)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와 간담회를 개최하고, 지식재산권 침해,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.

○ 이를 위해, ① 조사신청기간 확대*(1년 → 2년 이내)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, ② 신고센터별 당해 업종 물품의 수출입 감시 및 현장조사 강화, ③ 실적이 우수한 센터에 대한 성과보상제 실시 및 장관 표창 수여, ④ 업종별 간담회, 제도설명회 등 현장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.

*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기간을 행위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확대하는 '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에 관한 법률' 개정 중(산중위 상정('18.2))

○ 또한,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기전자·저작권 분야에 신고센터로 새롭게 지정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대한 지정서 수여식을 함께 열었다.

□ 무역위원회는 그동안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수출입·제조·판매 금지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여 기업의 피해를 구제해왔으며, (첨부 1 :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개요)

○ 산업현장에서의 효율적인 불공정무역행위 감시·적발을 위해 빈발 업종 중심으로 업종별 대표성이 있는 협회·단체 19개를 신고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. (첨부 2 : 신고센터 개요 및 현황)

□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, 누구든지 해당업종의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.

○ 무역위원회는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, 신고센터와 합동조사 등을 통해 관련 정보와 증거자료를 수집해 6개월 이내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해 판정한다.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한다.

○ 한편,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,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변호사,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% 범위 안에서 5,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.

*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문의 :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(02-2124-3165)

□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무역위원회 김창규 상임위원은 "최근, 기술 선진국 도약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가 지속 확대하고 있다."라고 말하고

* 지식재산권 수출액(억불) : ('14년) 84 → ('15년) 100 → ('16년) 107
*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판정(건수) : ('16년) 9건 → ('17년) 14건

○ "신고센터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불공정 무역행위의 발굴·조사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."라고 당부했다.

try of Trade, try and Energy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 정종윤 사무관(☎ 044-203-588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8-03-08 11:47:06

첨부 1 **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개요**

1. 개념 및 유형

□ 개념

○ 불공정무역행위는 수출입거래에 있어서 경쟁원리와 거래질서를 침해하여 경쟁 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무역행위

○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는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"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"에 의거,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고 무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

□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(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제1항)

지식재산권 침 해	○ 대한민국 법령·조약에 의해 보호되는 지식재산권(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상표권, 저작권, 저작인접권, 프로그램저작권,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, 지리적 표시, 영업비밀)을 침해하는 물품 등을 - 해외에서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- 수입하거나, 수입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- 수출하거나, 수출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
원산지표시 위 반	○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 등, ○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 등, ○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을 -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
품질거짓·과장 표시	○ 품질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 등을 -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
수출입 질서저해	○ 수출입계약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등의 수출입·분쟁발생 등을 통해, 대한민국의 대외 신용을 손상시켜 해당 지역에 대한 수출입에 지장을 주는 행위

2. 조사절차

조사신청 (신청인 ⇨ 무역조사실)
· 누구든지, 서면신청(조사신청서+증빙자료)
·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

직권조사
· 불공정무역행위혐의가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

조사개시 결정 (무역조사실 / 위원회보고)
① 신청기간, 신청서류 구비요건 검토, 보완
② 조사신청 후 20일내 결정

잠정조치
① 신청인의 잠정조치 신청(담보제공)
② 무역위원회가 시행여부 결정
③ 피신청인에게 잠정조치 명령

불공정무역행위 조사 (무역조사실)
· 서면조사 원칙, 면접 또는 현지조사 가능
· 외부전문가 감정, 기술설명회 등
· 사유발생시 조사 중지 및 종결
·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·판정

피신청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
· 제재조치(안)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의견제출 기회 부여(행정절차법 제21조, 제22조)

산업부 장관 의견청취
· 시정조치(안)에 대해 산업부장관(소관과) 의견조회

최종판정 (무역위원회)
① 조사개시 후 6월내 판정(2월씩 2회 연장 가능)
·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· 제재조치 수단 및 수준 결정
② 지재권 침해 기판정물품 확인

제재조치 시행 (무역위원회 ⇨ 피신청인)
· 시정조치 명령(시정조치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)
· 과징금 부과

이의신청 ((피)신청인 ⇨ 무역위원회)
·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내

이의신청 심의결정 (무역위원회)
· 신청일로부터 60일내 결정(30일 연장 가능)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8-03-08 11:47:06

첨부 2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개요 및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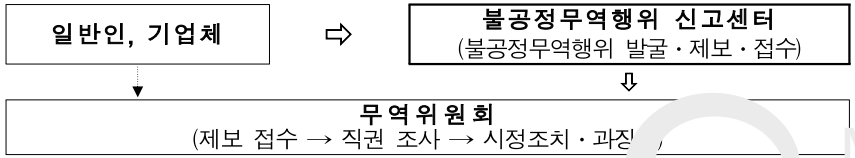
□ 신고센터 개요

○ (목적) 산업 현장에서의 불공정무역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·적발하기 위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지정·운영 ('07.9월~)

○ (기능) 불공정무역행위 발굴 및 상담, 발굴된 건을 무역위 조사와 연계, 당해 업종 물품의 수출입 감시 및 동향 분석, 홍보활동

- 불공정무역행위 입증에 필요한 자료 수집, 신고센터의 제보로 조사·개시되는 경우 무역위·신고센터 합동조사 실시

< 업무 추진절차 >



□ 신고센터 현황 [19개소(신규센터 3개소 포함)]

신고센터명	홈페이지 주소	연락처
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	www.e-tipa.org	02-3445-3763
한국지식재산보호원	www.koipa.re.kr	02-2183-5888
한국의류산업협회	www.kaia.or.kr	02-528-0116
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	www.kowic.or.kr	02-422-6690
한국기계산업진흥회	www.koami.or.kr	02-369-7852
대한안경사협회	www.optic.or.kr	02-756-1001
한국산업용재협회	www.kimta.kr	02-2275-4071
한국온라인쇼핑협회	www.kolsa.or.kr	02-784-4114
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	www.kotoy.or.kr	02-795-9505
한국판유리산업협회	www.flatglass.or.kr	02-3453-7991
한국베어링공업협회	www.kobema.or.kr	02-784-1705
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	www.kmdia.or.kr	070-7725-8730
한국철강협회	www.kosa.or.kr	02-559-3558
한국무역협회	www.kita.net	02-6000-5518
대한화장품협회	www.kcia.or.kr	070-8709-8614
한국완구협회	www.koreatoy.or.kr	031-348-8674
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	kocla.org	02-517-6450
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	www.kea.org	02-6388-6072
한국저작권보호원	www.kcopa.or.kr	02-3153-2712